

제4차산업경제위원회
2014.12.09.(화)14:00~

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설치 및
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산 업 경 제 위 원 회
수석전문위원 나기성

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설치 및
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2014년 12월 1일

나. 회부일자 : 2014년 12월 2일

3. 제안 이유

- 농어촌개발기금 용자사업의 이율 인하 및 기금운용 방안 개선을 통하여 농·어업인에게 기금 수혜 기회를 확대하고, 농·어촌 활력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가. 농어촌개발기금 용어 정비(안 제2조)

- 종료된 사업(지역명품)의 용어 및 내용 삭제

나. 농어촌개발기금 사업 지원 범위 확대(안 제5조)

- 제1호 내용 중 농·어업인의 소득개발을 위한 사업에서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사업 추가

다. 용자금 이자 이율 인하(안 제8조)

- 용자금 이자 : 1.5% ⇨ 1.0%

5. 검토의견

- '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'은 농어촌개발기금 용자사업의 이율 인하 및 기금운용 방식을 개선하여 농어업인에게 기금수혜 기회를 확대하고 농어촌 활력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은 타당함.
- 다만, 제2조 제목을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'용어의 정의'에서 '정의'로, 안 제2조제5호의 용어를 삭제함에 따라 그 내용인 제5조제4호를 함께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며, 향후 동 조례의 개정 에 따라 용자금 이자가 연 1.5퍼센트에서 연 1퍼센트로 낮아질 경우 기금운용자에게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혜택을 주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.